회사 급여 계산 방식 (2024년 기준)

1. 급여 계산의 기본 원칙

- 본 급여 계산 로직은 2024년 기준으로 회사에서 사용하는 급여 산정 방식을 명확히 정의합니다.
- 급여 계산 과정은 다음의 주요 단계를 포함합니다:
 - 1. 무급 휴가 차감 계산
 - 2. 세금 및 4대 보험 공제
 - 3. 최종 실수령액 산정
 - 4. 초과근무 수당 계산
 - 5. 퇴직금 계산

2. 무급 휴가 차감 계산 방식

- 공식
 - 차감액 = (월급 ÷ 실제 근무일수) × 무급 휴가 일수
- 예시
 - 월급: 3,000,000원
 - 실제 근무일수: 20일 (실제 출근일 + 공휴일 + 유급휴가 포함)
 - 무급 휴가 일수: 1일
 - 차감액 계산:
 - 차감액 = 3,000,000원 ÷ 20 × 1 = 150,000원
 - 차감 후 월급 = 3,000,000원 150,000원 = 2,850,000원
- 추가 정보
 - 차감된 월급은 이후 세금 및 4대 보험 공제의 기준 금액으로 사용됩니다.

- 3. 세금 및 4대 보험 공제 방식
 -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
 - 소득세:
 - 간이세액표를 기반으로 사원의 월급과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계산.
 - 지방소득세:
 - 소득세의 10% (10원 단위 절사).
 - 4대 보험료 공제 항목

○ 국민연금: 월급 × 4.5%

○ 건강보험: 월급 × 3.545%

○ 장기요양보험: 건강보험료 × 12.81%

○ 고용보험: 월급 × 0.9%

- 4. 최종 실수령액 계산 방식
 - 공식
 - 최종 실수령액 = 차감된 월급 (소득세 + 지방소득세 + 4대 보험료)
 - 설명
 - 차감된 월급에서 모든 공제 금액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지급될 금액을 계산 합니다.
- 5. 초과근무 수당 계산 방식
 - 공식
 - 통상 시급 = 계약 월급 ÷ 209시간
 - 초과근무 수당 = 통상 시급 × 1.5 × 초과근무 시간
 - 설명
 - 초과근무 시간에 대한 추가 지급 금액을 계산하며, 계약 월급과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.

6. 퇴직금 계산 방식

- 평균임금 산정 공식
 - 평균임금 = (3개월 간의 총 급여) ÷ (3개월 간의 총 근무일수)
 - 단,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사용.
- 예시
 - 3개월 간 총 근무일수: 92일
 - 3개월 간 총 급여: 9,000,000원
 - 평균임금 계산:
 - 평균임금 = 9,000,000원 ÷ 92일 ≈ 97,826원/일
- 추가 정보
 - 퇴직금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, 법적 요건을 준수합니다.

부록: 급여 계산 로직 요약

- 무급 휴가 차감: 무급 휴가 사용일에 따른 차감 금액을 반영.
- 세금 및 4대 보험 공제: 간이세액표와 4대 보험 요율을 기준으로 월급에서 공제.
- 최종 실수령액: 모든 공제 항목을 반영한 후 최종 지급 금액 산출.
- 초과근무 수당: 초과근무 시간에 대해 통상 시급의 1.5배로 추가 지급.
- 퇴직금: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.